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헌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1

발의연월일: 2024. 6. 19.

발 의 자:이헌승·박덕흠·곽규택

김종양ㆍ서지영ㆍ서일준

주호영 • 박수민 • 고동진

박준태 · 최형두 · 강선영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이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농촌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혼인기간을 채운 후 가출하여 혼인이 파탄되거나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례와 같이 국적 취득만을 목적으로 혼인기간 유지 후 이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국제 결혼한 농촌 남성들과 가족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에 대한 간이귀화의 거주기 간 요건을 2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 국적취득 요건을 보 다 강화함으로써 국적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위장 국제결혼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1호 중 "2년 이상"을 "4년 이상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3년이"를 "5년이"로, "1년 이상"을 "3년 이상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간이귀화 요건 강화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에게 귀화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6조(간이귀화 요건) ① (생	제6조(간이귀화 요건) ① (현행과		
략)	같음)		
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	2		
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		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			
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			
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			
허가를 받을 수 있다.			
1.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	1		
대한민국에 <u>2년 이상</u> 계속하	<u>4년 이상</u>		
여 주소가 있는 사람			
2.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<u>3년</u>	2 <u>5년</u>		
<u>이</u>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	<u>o]</u>		
한민국에 <u>1년 이상</u> 계속하여	<u>3년 이상</u>		
주소가 있는 사람			
3. • 4. (생 략)	3. • 4. (현행과 같음)		